

춘천지방법원 2022. 8. 16 선고 2021가단1608 판결 [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청구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7. 5.

판 결 선 고 2022. 8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9,5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20. 5. 22. 피고와 피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답 1,111㎡와 E 답 1,193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를 매매대금 76,600,000원에, F 답 1,445㎡, G 답 1,669㎡, H 답 2,853㎡, I 답 1,385㎡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244,6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,320,000원과 24,460,000원 합계 39,78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무단매립된 동물사체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상복구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.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, 피고에게 계약금 39,785,000원과 위약금 39,785,000원 합계 79,57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 단

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, 이 사건 토지에 동물사체가 무단매립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김도현